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4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91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3 ~ 92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 ~ 9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3 ~ 9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91
----------	-----------

제출연월일	2013. 11.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4. 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0. 22. ~ 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읍·면종합복지회관”이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신고 또는 임대사용”을 “사용허가”로 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 4. 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
 - 2.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해당 시설 또는 비품의 가액과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읍·면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을 “읍·면장이 결정한”으로 한다.

제20조 중 “동 조례”를 “같은 조례”로 한다.

제5장(제21조·제22조)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u>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읍·면종합복지회관</u>----- ----- -----</p>
<p>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거창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2.건물 : 300평방미터 이상</p>	<p>제2조(위치)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0조(사용료 수가) ① (생략) 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10조(사용료 수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임대사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신고서를 제출코자 하는자는 사용기간, 개시전까지 읍·면장에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신고 또는 임대사용 신청 즉시 사용신고 접수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p>	<p>제11조(사용허가) ----- -----<u>사용허가</u>-----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p>

현행	개정안
<p>③ 제1항제2호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p>	<p><삭 제></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자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p>
<p>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p>
<p>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p>	<p>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p>	<p>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를</p>

현행	개정안
<p>3. <u>사용신고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 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신고를 취소 하였을 때</u></p> <p>제14조(사용신고 취소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복지회관의 사용신고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1. <삭제>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 3. 신고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4. <삭제> 5. <삭제>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때</p> <p>② <u>사용신고서 접수후 제1항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u></p> <p>제17조(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u></p> <p>③ (생략)</p> <p>제19조(관리인) ① ~ ③ (생략) ④ <u>보조관리인에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u> 보수를 지급한다.</p>	<p>취소하는 경우 : 전부</p> <p>4. <u>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u></p> <p>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다.</p> <p>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 2.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p> <p>② <u>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 지지 아니한다.</u></p> <p>제17조(손해배상) ①----- ----- ---- <u>그 밖의</u> ----- ----- -----</p> <p>② <u>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해당 시설 또는 비품의 가액과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읍·면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관리인) ① ~ ③ (생략) ④ ----- 읍·면장이 결정한 -----</p>

현행	개정안
<p>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0조(물품의 관리) ----- ----- 같은 조례-----</p>
<p>제5장 위탁관리</p>	<p><삭 제></p>
<p>제21조(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p> <p>③ 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위탁 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22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 회이상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거창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23조(준용)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p>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92
----------	-----------

제출연월일	2013. 11.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삶의 쉼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4조)
 -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나. 삶의 쉼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제4항, 별표 2)
 - 전액반환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삶의 쉼터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등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노인복지법」 제3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0. 22. ~ 11. 1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송정리 941-4번지”를 “거안로 1266-41”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창군노인복지회관”을 “거창군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며,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라 한다.</p> <p>②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u>송정리 941-1번지</u>에 둔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p> <p>② -----<u>거안로 1266-4</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삶의 쉼터”란 <u>거창군노인복지회관</u>,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3조(정의) ----- -----<u>뜻은</u>-----</p> <p>1. -----<u>거창군노인복지관</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요시설) ① <u>노인복지회관</u>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4조(주요시설) ① <u>노인복지관</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삶의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p>	<p>제6조(운영) ① ----- ----- ----- ----- -----</p> <p>② <u>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월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삶의 컴퓨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신 설></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p>	<p><삭 제></p> <p>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 별지 서식----- ----- ② ----- -----별표 1-----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2조(준용) ----- ----- ----- 「여성발전기본법」-----</p>

[별표 2]

거창군 삶의 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4항 관련)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삶의 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삶의 쉼터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삶의 쉼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삶의 쉼터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사용개시 이후 삶의 쉼터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삶의 쉼터 사용 중 사용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93
----------	-----------

제출연월일	2013. 11. 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직급별 정원 비율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 1)

- 일반직 비율 : 80%이상(현행) → 99%(증 19%)
- 기능직·고용직 비율 : 17%이내(현행) → 0%(감 17%)
- 별정직·정무직 비율 : 3%이내(현행) → 1%(감 2%)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부분(별표 2의 제2호)의 기준을 삭제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50명
 - 현행 : 536명(본청243명, 의회8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36명)
 - 조정 : 586명(본청265명, 의회11명, 직속기관91명, 사업소45명, 읍37명, 면137명)
- 기능직 정원 : 감50명
 - 현행 : 50명(본청22명, 의회3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4명, 읍4명, 면1명)
 - 조정 : 0명(본청0명, 의회0명, 직속기관0명, 사업소0명, 읍0명, 면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상위법령 단순집행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중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p> <p>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u>직급별 정원</u>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u>직급별 정원</u>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u>직렬별 정원</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p> <p>①-----</p> <p>-----</p> <p>② <u>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u>-----</p> <p>---</p> <p>제4조(직급별 정원) -----</p> <p><u>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u>-----</p> <p>-----</p> <p>제5조(직렬별 정원) -----</p> <p><u>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u>-----</p>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이상	0	1%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이내	7%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0%이내	0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58	282	14	125	62	63	51	38	148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25 575	279 257	14 11	97 91	34 29	63 62	49 35	38 34	148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86 536	265 243	11 8	91 85	30 25	61 60	45 31	37 33	137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기능직		0 50	0 22	0 3	0 6	0 5	0 1	0 14	0 4	0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94
----------	-----------

제출연월일	2013. 11.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인구증가 정책 추진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 및 조정함(안 제3조)

▷ 기획감사실

- 사무인수 :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창조정책과

- 사무이관 :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상위법령 단순집행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장 가. ~ 마. (생략)</p> <p><u><신 설></u></p> <p>2. ~ 3. (생략)</p> <p>4. 창조정책과장 가. ~ 나. (생략)</p> <p><u>다.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u>라. ~ 사. (생략)</u></p> <p>5. ~ 13.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u>바.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3. ~ 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다. ~ 마. (현행 리목부터 시목까지와 같음)</u></p> <p>5. ~ 13. (현행과 같음)</p>